

#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·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  
1999. 6. 19.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9년 4월 29일

· 회부일자 : 1999년 4월 29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161회 임시회

·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1999.6.17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원시험연구부장 최 관 순)

가. 제안 이유

행정조직 개편에 의한 명칭의 변경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

## 나. 주요 골자

### ○ 명칭변경

- 농촌진흥원 → 농업기술원
- 농촌진흥원장 → 농업기술원장
- 진흥원 → 기술원

### ○ 불합리한 사항 개선·보완

- “검정”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삭제
- 분석 및 검정 → 분석
- 농업기술, 작물, 원예, 축산 → 농작물(안 제2조 제1호, 제3호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정 노 환)

행정기구 명칭 변경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“검정”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인 바

(안)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의 경우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하고

(안) 제7조 제1항 제1호는 시험 거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삭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.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: 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 : “ 생 략 ”

6. 수 정 안 요 지 :

가. 수 정 이 유

-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에 대하여 수시로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
- 불합리한 시험거부 조항 삭제

나. 수정 주요 골자

- 제4조 제2항 : 시험의 의뢰는 시험목적, 처리기간 및 작물재배시기등을 감안하여 여름작물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, 겨울작물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한다. 다만,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
- 제7조 : 제목 “거절”을 “거부”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며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.

7. 심 사 결 과 : “ 수정 및 가결 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
## 10. 별 첨

- ◎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·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- ◎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·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- ◎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·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- ◎ 대비표